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공정거래의 첫걸음! 계약서 작성 편

#1



공정거래위원회

Q.1

계약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면 계약서가
꼭 필요해요.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Q.2

계약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공사 착수 전에 계약서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공사 중에 추가·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수정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항상 계약 내용과 공사 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Q.3

계약서를 못 받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작업내용과 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서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

원사업자가 서면을 받고도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공사중에
추가·변동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조정액 등 포함), 지급방법 및 기일
- ✓ 위탁일, 납품일시 및 장소
- ✓ 목적물,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 방법 등
- ✓ (필요시) 원재료의 제공 관련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빠뜨리는 내용없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위반시 조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벌점도 부과 받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의 한마디

서로 믿을 만한 업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계약서는 기본!
꼭 작성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공사대금은 소중한니까! 대금 지급보증 편

#2



공정거래위원회

Q.1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뭔가요?



공사대금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사를 다 마쳤는데도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정하는거죠.



공정거래위원회

Q.2



**좋은 제도네요! 그런데 지급보증에는
비용이 들텐데 원사업자가 해줄까요?**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대금 지급보증을 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Q.3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을 받기만
하면 되나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해주어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이행보증을 해주어야 해요.

**대금 지급보증과 계약 이행보증을
서로 주고 받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지급 보증의 범위

대금 지급보증은 약 4개월분의
공사대금을 보증해줘요.
만약,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게

지급보증의 내용도 변경해주어야 해요.

상세한 내용은
[하도급법 제13조의2]와 지급보증
계약서·약관을 참조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보증기관

✓ 건설관련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용보증기금

✓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회사·은행



공정거래위원회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신용등급이 높아도
지급보증은 꼭 해야해요.
(2020. 7. 8. 시행)

※ 2020. 7. 7. 이전까지는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 이상,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인 기업은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 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의 한마디

“지급보증은 매년 3만건
(금액 기준으로는 5조 원 이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
대금 지급보증을 꼭 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플랜 B를 준비하세요! 대금 직접지급 편

#3



공정거래위원회

Q.1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Q.2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지급이 안되나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합의가 없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Q.3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직접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대금을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시스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아래 시스템을 운영중이에요.

- ✓ 「상생결제시스템」 (winwinpay.or.kr)
- ✓ 「하도급지킴이」 (hado.g2b.go.kr)
- ✓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pay.gg.go.kr)
- ✓ 「체불e제로」 (epayment.kr.or.kr)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지급 사유

✓ 원사업자가

파산 등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한 때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지급 시 원사업자의 조치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기로 했다면 원사업자는 별도로
대금지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직접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의 한마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못 받았더라도 지급보증기관이나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이자율이 15.5%! 대금 지연이자 편

#4



공정거래위원회

Q.1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늦어도
60일**까지는 주어야 해요.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주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Q.2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연 15.5%예요.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Q.3



대금을 60일 안에 주긴 했는데,
어음으로 주네요. 만기는 3달 후고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만기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함께 주어야 해요.
어음할인율은 연 7.5%예요.



하도급법과 다르게 지연이자를 정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주지 않기로 정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도 만기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함께 주어야 해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마다
그리고 금융기관마다 달라요



공정거래위원회



지연이자율·어음할인율 확인하기

지연 이자율은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서 어음할인율은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에서 정하고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www.law.go.kr 에서 확인
메뉴>행정규칙 에서
“지연이율” 또는 “할인율” 검색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의 한마디

“계약은 꼭 지켜야 해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대금을 늦게 주면 안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대화가 필요해! 대금의 조정 편

#5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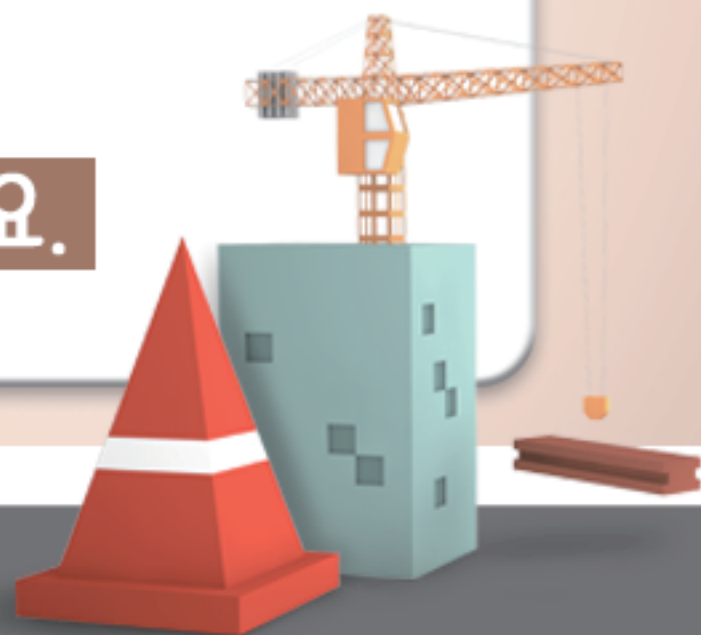
Q.1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도급금액을
증액했는데, 수급사업자인 저에게는
소식이 없어요.**



**그럼 안 되죠. 원사업자는 도급금액이
증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Q.2



발주자가 도급금액을 증액해주면
하도급대금도 증액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증액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그 증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증액 해줘야 해요.



Q.3



공사 원가가 올라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꼭 필요해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세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제16조와 제16조의2의 차이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16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발주자의 증액	공급원가의 변동 (발주자 증액 무관)
법적의무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필수	조정 신청 시 협의 필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물가변동 증액 사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아래 사유 등으로
물가변동 증액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두면 좋아요.

-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된 경우
- ✓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100 이상인 경우

▶ 상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등]을 참조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통한 대금 조정

원사업자가 10일 동안 대금 조정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588-1490, www.kofair.or.kr)
-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2-549-2105~6, www.csdmc.or.kr)



실무자의 한마디

“원사업자와 계속 소통하세요!
공정위 신고보다는 분쟁조정이,
분쟁조정보다 당사자간
대화·소통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